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사후정리특약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주계약에 준함

나. 보험료 납입기간

해당사항 없음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주계약에 준함

라. 보험료 납입주기

해당사항 없음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한다.
- 나.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본다.
- 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약관 제4조(회사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지급보험금액의 한도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포함)의 50% 이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다른 보험계약을 더하여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주계약 및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액은 제외한다.

14. 기타

가. 부가대상상품

(1) 이 특약은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목의 계약에는 부가하지 아니한다.

(가) 제3보험

(나) 어린이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보험

(다) 단체보험

(2) 이 특약의 판매이전 체결된 주계약에 대하여도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나. 기타사항은 주계약에 준함